
휴게시설(졸음쉼터 등)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26.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 참여기술인	소 계	50	
	계	11	
	가. 등 급	1) 사업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3 4 (2.5) (1.5) 4 (2.5) (1.5)
	나. 경 력	계 1) 사업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16 4 7 (4.0) (3.0) 5 (3.0) (2.0)
	다. 실 적	계 1) 사업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통분야 - 도로분야	21[18] 8[5] 8 (5.0) (3.0) 5 (3.0) (2.0)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마. 교육훈련	-	2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소 계	15
	가. 실적 금액 및 건수	-	15
	3. 신용도	소 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	4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다. 벌점	-	2	
라. 감사기관 처분	-	1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가. 개발실적	-	2	
나. 투자실적	-	10	
다. 활용실적	-	3	
5. 업무중복도	소 계	10	
가. 사업 책임기술인	-	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교통분야	-	(2.5)	
- 도로분야	-	(1.5)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교통분야	-	(1.2)	
- 도로분야	-	(0.8)	
라. 실무기술인	-	1	
6. 가점	소 계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	-	+0.2	
총 계		100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시 적용 배점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적용시점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과업발주 공고일로 함 ○ 유사과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11조, 제13조에 의한 고속국도 및 지선 - 도로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일반국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인 일반국도 및 지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특별시도, 광역시도, 동법 제15조에 의한 지방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 또는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도로 ○ 유사과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150일 이상인 휴게시설(졸음쉘터 등)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일괄입찰, 교통영향평가((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리모델링) 교통영향분석 - 계약기간 60일 이상인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단,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함) ○ 발주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 유사과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행 과업은 본 과업의 내용 및 성격과 상이하여 미반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정도는 본 과업과 무관하여 미반영 ○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함 ○ 과업별 계수 <table border="1" data-bbox="327 1827 1426 205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구 분</td> <td style="width: 45%;">휴게시설 조성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교통영향분석</td> <td style="width: 40%;">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8</td> </tr> </table> 		구 분	휴게시설 조성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교통영향분석	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계 수	1.0	0.8
구 분	휴게시설 조성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교통영향분석	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계 수	1.0	0.8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참여기술인	소 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365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참여기술인에 대해 세부항목별(등급, 경력 및 실적) 해당점수에 이적 보정계수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또는 회사 경영 악화(이적 전 회사 발행 이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폐업·도산'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인 경우에 한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제외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0.9 + 0.1 \times (A/365)$ (A : 이적 후 경과일수)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제한없이 인정 참여기술인 항목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해당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임을 입증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증빙서류는 발주청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분야별 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식 : $\Sigma(\text{기술인별 배점} \times \text{해당점수 비율})$ 																																			
	1)사업 책임기술인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기술인의 관련 전문분야 기술등급 																																			
	2)분야별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4.0 (2.5) (1.5)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등급</th> <th colspan="3">사업책임</th> <th colspan="3">분야별책임</th> </tr> <tr> <th>특급</th> <th>고급</th> <th>중급이하</th> <th>특급, 고급</th> <th colspan="2">중급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비율(A)</td> <td>100%</td> <td>80%</td> <td>0</td> <td>100%</td> <td colspan="2">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기술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특급, 고급, 중급</th> <th>초급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비율(A)</td> <td>100%</td> <td>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인 전문분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책임</th> <th>교통책임</th> <th>도로책임</th> </tr> <tr> <th>교통참여</th> <th>도로참여</th> </tr> </thead> <tbody> <tr> <td>전문분야</td> <td>교통</td> <td>교통</td> <td>도로·공항</td> </tr> </tbody> </table>	등급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특급	고급	중급이하	특급, 고급	중급이하		비율(A)	100%	80%	0	100%	80%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비율(A)	100%	80%	구분	사업책임	교통책임	도로책임	교통참여	도로참여	전문분야	교통	교통
등급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특급	고급	중급이하	특급, 고급	중급이하																																	
비율(A)	100%	80%	0	100%	80%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비율(A)	100%	80%																																				
구분	사업책임	교통책임	도로책임																																			
		교통참여	도로참여																																			
전문분야	교통	교통	도로·공항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참여기술인	나. 경 력	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해당점수 비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관련 전문분야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비율(A)을 곱하여 산정 - 경력(년) = (전문분야 참여일수 + 전문분야 외 참여일수 × 0.6)/365 - 기술인 전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 : 교통 · 교통책임 및 교통참여 : 교통 · 도로책임 및 도로참여 : 도로·공항 																										
	1)사업 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3)분야별 참여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4.0 7.0 (4.0) (3.0) 5.0 (3.0) (2.0)	- 경력기준 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경력기준</th> <th rowspan="2">비율(A)</th> </tr> <tr> <th>사업책임</th> <th>분야별 책임기술인</th> <th>분야별 참여기술인</th> </tr> </thead> <tbody> <tr> <td>9년 미만</td> <td>4년 미만</td> <td>2년 미만</td> <td>60%</td> </tr> <tr> <td>9년 이상 ~ 11년 미만</td> <td>4년 이상 ~ 6년 미만</td>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70%</td> </tr> <tr> <td>11년 이상 ~ 13년 미만</td> <td>6년 이상 ~ 8년 미만</td>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0%</td> </tr> <tr> <td>13년 이상 ~ 15년 미만</td> <td>8년 이상 ~ 10년 미만</td>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90%</td> </tr> <tr> <td>15년 이상</td> <td>10년 이상</td> <td>5년이상</td> <td>100%</td> </tr> </tbody> </table>	경력기준			비율(A)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9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60%	9년 이상 ~ 11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70%	11년 이상 ~ 13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0%	13년 이상 ~ 15년 미만	8년 이상 ~ 10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90%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이상
경력기준			비율(A)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9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60%																										
9년 이상 ~ 11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70%																										
11년 이상 ~ 13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0%																										
13년 이상 ~ 15년 미만	8년 이상 ~ 10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90%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이상	10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참여기술인	다. 실 적	21.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 B)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수 및 개월수 : Σ{최근 10년간 해당 전문분야 유사과업 참여건수(또는 참여개월수)×과업별 계수} * 최근 10년(기준기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 참여건수 : (참여기간/총계약기간) × 1건 · 참여개월수 : 참여기간(중복참여기간 제외) / 30일 * 과업별로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과업 중 1건만 적용 ○ 과업발주 공고일 이전에 최종 차수의 과업이 준공된 실적(장기계속의 경우 차수준공은 제외)만 인정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 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1)사업 책임기술인	8.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인 <table border="1"> <tr> <td>참 여 횃 수</td> <td>4건미만</td> <td>6건미만</td> <td>8건미만</td> <td>10건미만</td> <td>10건이상</td> </tr> <tr> <td>비율(A)</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참 여 개 월 수</td> <td>24개월 미만</td> <td>32개월 미만</td> <td>40개월 미만</td> <td>48개월 미만</td> <td>48개월 이상</td> </tr> <tr> <td>비율(B)</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참 여 횃 수	4건미만	6건미만	8건미만	10건미만	10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 월 수	24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40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참 여 횃 수	4건미만	6건미만	8건미만	10건미만	10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 월 수	24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40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2)분야별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8.0 (5.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책임기술인 <table border="1"> <tr> <td>참 여 횃 수</td> <td>4건미만</td> <td>5건미만</td> <td>6건미만</td> <td>7건미만</td> <td>7건이상</td> </tr> <tr> <td>비율(A)</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참 여 개 월 수</td> <td>24개월 미만</td> <td>28개월 미만</td> <td>32개월 미만</td> <td>36개월 미만</td> <td>36개월 이상</td> </tr> <tr> <td>비율(B)</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참 여 횃 수	4건미만	5건미만	6건미만	7건미만	7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 월 수	24개월 미만	28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참 여 횃 수	4건미만	5건미만	6건미만	7건미만	7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 월 수	24개월 미만	28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참여기술인	3)분야별 참여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5.0 (3.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참여기술인 <table border="1" data-bbox="683 349 1452 495"> <tr> <td>참 여 횟 수</td> <td>2건미만</td> <td>3건미만</td> <td>4건미만</td> <td>5건미만</td> <td>5건이상</td> </tr> <tr> <td>비율(A)</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683 517 1452 663"> <tr> <td>참 여 개월수</td> <td>12개월 미만</td> <td>16개월 미만</td> <td>20개월 미만</td> <td>24개월 미만</td> <td>24개월 이상</td> </tr> <tr> <td>비율(B)</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참 여 횟 수	2건미만	3건미만	4건미만	5건미만	5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월수	12개월 미만	16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참 여 횟 수	2건미만	3건미만	4건미만	5건미만	5건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참 여 개월수	12개월 미만	16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책임 기술인에 한해 평가 ○ 산출식 : 배점 × A <table border="1" data-bbox="683 813 1452 947"> <tr> <td>구분</td> <td>최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불량</td> </tr> <tr> <td>비율(A)</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 제출시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붙임 1 양식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서에 기술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평가 ○ 사업비 5억원 미만 과업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세부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는 우리공사 유관부서 근무직원 6인 이상을 평가자로 선정하여 붙임 2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 평가항목별로 붙임 3 “업체 수별 상대평가 항목 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전체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 - 합산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붙임 3 “업체 수별 상대평가 항목 등급 배분표”에 따라 업체별 등급 배분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비율(A)	100%	90%	80%	70%	60%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비율(A)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참여기술인	다.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교육수료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에 의거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인원수/평가대상 인원수)×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인원수/평가대상 인원수)×1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2.유사과업 수행실적	소 계	15.0												
	가. 실적금액 및 건수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과업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과업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해당 유사과업임을 입증하는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1건의 과업을 수차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최종차수의 과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건의 실적으로 인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실적 건수(금액)의 산정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총 과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단,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공문 또는 확인서 등) 경우에만 인정] 산출식 : [7.5점 × A] + [7.5점 × B] 											
	1)실적금액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식 : 배점 × A <table border="1"> <tr> <td>실적금액</td> <td>25억 미만</td> <td>30억 미만</td> <td>35억 미만</td> <td>40억 미만</td> <td>40억 이상</td> </tr> <tr> <td>비율(A)</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금액 : $\sum(\text{최근 5년간 유사과업 실적금액} \times \text{공동도급비율(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times \text{과업별 계수})$ 	실적금액	25억 미만	30억 미만	35억 미만	40억 미만	40억 이상	비율(A)	60%	70%	80%	90%
실적금액	25억 미만	30억 미만	35억 미만	40억 미만	40억 이상									
비율(A)	60%	70%	80%	90%	100%									
2)실적건수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식 : 배점 × B <table border="1"> <tr> <td>참여건수</td> <td>1.2건미만</td> <td>1.8건미만</td> <td>2.4건미만</td> <td>3건미만</td> <td>3건이상</td> </tr> <tr> <td>비율(B)</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건수 : $\sum(\text{최근 5년간 유사과업 실적건수} \times \text{공동도급비율(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times \text{과업별 계수})$ 	참여건수	1.2건미만	1.8건미만	2.4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참여건수	1.2건미만	1.8건미만	2.4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비율(B)	60%	70%	80%	90%	10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신용도	소 계	10.0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 감점에 의한 최종 점수가 0점보다 작을 경우, 0점 적용 																				
	나. 재정상태 건설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body>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4 신용평가등급 분류기준 참조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신용도	다. 별점	2.0	<p>○ 산출식 : 배점 × A</p> <p>- 별점합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별점 +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p> <p>*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엔지니어링사업자별 당해 과업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엔지니어링사업자별 당해 과업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수)</p> <p>-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 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A :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산별점 계수</p> <table border="1"> <tr> <td>합산별점 합계</td> <td>0.5점 미만</td> <td>0.5점이상 1.5점미만</td> <td>1.5점이상 2.5점미만</td> <td>2.5점이상 3.5점미만</td> <td>3.5점 이상</td> </tr> <tr> <td>계수(A)</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able> <p>※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합산별점(최근2년간의 반기별점의 합 계를 2로 나눈 값)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p>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5점미만	2.5점이상 3.5점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5점미만	2.5점이상 3.5점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라. 감사기관 처분	1.0	<p>○ 산출식 : 배점 × A</p> <p>- A : 우리공사 감사처 처분 계수</p> <table border="1"> <tr> <td>처 분 감점합계</td> <td>0.50점 미만</td> <td>0.50점이상 0.75점미만</td> <td>0.75점이상 1.00점미만</td> <td>1.00점이상 1.25점미만</td> <td>1.25점 이상</td> </tr> <tr> <td>계 수(A)</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able> <p>※ 과업부실로 최근 2년간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이 우리공사 감사처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이하 “처분”)을 받은 건수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p> <p>※ 처분감점 합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처분감점 + 기술인별 처분감점</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구 분</td> <td colspan="2">유형별 처분감점(B)</td> </tr> <tr> <td>주의</td> <td>경고</td> </tr> <tr> <td>엔지니어링사업자</td> <td>0.25점 / 건</td> <td>0.5점 / 건</td> </tr> <tr> <td>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td> <td>0.1점 / 건</td> <td>0.2점 / 건</td> </tr> </table> <p>※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인별) 감사처분 감점 = ∑ (B× 처분 건수)</p> <p>※ 감사처분은 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p>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이상 0.75점미만	0.75점이상 1.00점미만	1.00점이상 1.25점미만	1.25점 이상	계 수(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엔지니어링사업자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0.2점 / 건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이상 0.75점미만	0.75점이상 1.00점미만	1.00점이상 1.25점미만	1.25점 이상																				
계 수(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엔지니어링사업자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0.2점 / 건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0																				
	가. 개발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sum (\text{건당 } 1.0 \times A \times B) \leq 2.0\text{점}$ - A : 기술 등급별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 분</td> <td>건설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r> <tr> <td>가중치</td> <td>2.0</td> <td>1.0</td> <td>0.5</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 분</td> <td>5년 미만</td>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2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은 교통 및 도로 분야 중 교통소통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한함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실안은 특허등록결정일,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나. 투자실적	10.0	<p>○ 투자실적 = $\frac{\text{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합계}}{\text{최근3년간건설부문총매출액합계}} \times 100$</p> <table border="1" data-bbox="678 369 1453 497"> <tr> <td>투 자 실 적</td> <td>1.50% 이상</td> <td>1.50%미만 1.25%이상</td> <td>1.25%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미만 0.5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p> <p>○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p> <p>○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p> <p>○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p> <p>○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p>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투 자 실 적	1.50% 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3.0	<p>○ 산출식 = $\sum(A \times B \times C) \leq 3.0$점</p> <p>- A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 가중치</p> <table border="1" data-bbox="678 421 1465 631">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able> <p>※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 B : 기술 등급별 가중치</p> <table border="1" data-bbox="678 795 1465 887"> <tr> <td>구 분</td> <td>건설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6</td> <td>0.3</td> </tr> </table> <p>- C :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data-bbox="678 1003 1465 1182">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d>20년이상</td> </tr> <tr> <td>특 허</td> <td>1.0</td> <td>0.8</td> <td>0.6</td> <td>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td> <td>0</td> </tr> </table> <p>※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 활용한 실적에 한해 1.0 적용 (보호기간 경과 후 활용실적은 가중치 0 적용)</p> <p>○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p> <p>○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p>○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p> <p>○ 특허 및 실용신안이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5. 업무 중복도	소 계	10.0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가. 사업 책임기술인	3.0	○ A : 당해 과업 평가대상자(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과업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비율에 따른 적용 비율 - 책임, 참여, 실무기술인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d>중복비율</td> <td>200% 미만</td> <td>200%이상 250%미만</td> <td>250%이상 300%미만</td> <td>300%이상 350%미만</td> <td>350% 이상</td> </tr> <tr> <td>적용비율 (A)</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 중복비율 = $\frac{\sum(\text{기술인별 각 과업의 중복(잔여) 과업기간}}{\text{해당과업기간}} \times 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과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각 과업의 최대 중복(잔여)과업기간은 해당 과업의 기간만큼만 산입 ○ 잔여 과업기간은 해당 과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적용 ○ 공고일 기준 중복(잔여)과업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과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기술자문(비상주부문), 일괄, 대안, 기술제안,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의 실적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 이상	적용비율 (A)	100%	90%	80%	70%	60%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 이상								
	적용비율 (A)	100%		90%	80%	70%	60%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4.0 (2.5) (1.5)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통분야 .도로분야	2.0 (1.2) (0.8)														
라. 실무기술인	1.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6. 가 점	소 계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table border="1"> <tr> <td>신규 고용율</td> <td>1% 이상</td> <td>2% 이상</td> <td>3% 이상</td> </tr> <tr> <td>점 수</td> <td>0.1</td> <td>0.2</td> <td>0.3</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frac{\text{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text{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 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신규 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 수	0.1	0.2	0.3
	신규 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 수	0.1	0.2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과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border="1"> <tr> <td>당해 과업참여 인원비율</td> <td>5% 이상</td> <td>3% 이상</td> <td>1% 이상</td> </tr> <tr> <td>가점</td> <td>0.2점</td> <td>0.15점</td> <td>0.1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참여 인원비율 : $\frac{\sum(\text{구성원별 당해 과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sum(\text{구성원별 당해 과업 전체 참여인원수})} \times 100$ ※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을 미적용 	당해 과업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당해 과업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술인, 유사과업 사업수행실적, 업무중복도,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우선한다.

2. 평가일반사항

- 1) 이 평가기준은 교통 및 도로분야가 주된 분야인 일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조성계획 수립(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중 과업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1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업에 적용하며, 발주하고자 하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의 점수계산은 소숫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
 - 구성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단, 유사과업 수행실적(실적금액 및 건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은 구성원의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지분율의 $\pm 1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단, 공동도급 구성원 별로 참여기술인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5)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류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 한다.
- 6)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과업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7)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8)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 1) 과업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2.3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과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1항에 의거, 10억원 미만의 과업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과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과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과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과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과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과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과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과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과업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과업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2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가이드라인(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	등급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합 계	100			기술 능력
당해과업의 수행능력	40	최우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에 대한 특성,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탁월 ○ 특성분석 및 해결과제, 처리방안 제시가 탁월 ○ 조사, 분석내용의 계량화가 탁월 ○ 당해 과업과 참여기술진의 기술능력의 조화가 탁월
		우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에 대한 특성,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 ○ 특성분석 및 해결과제, 처리방안 제시가 우수 ○ 조사, 분석내용의 계량화가 우수 ○ 당해 과업과 참여기술진의 기술능력의 조화가 우수
		보통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 ○ 특성분석 및 해결과제, 처리방안 제시가 보통 ○ 조사, 분석내용의 계량화가 보통(비계량적 요소가 많음) ○ 당해 과업과 참여기술진의 기술능력의 조화가 보통
		미흡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 ○ 특성분석 및 해결과제, 처리방안이 상투적으로 미흡 ○ 조사, 분석내용이 계량적이기보다 비계량적 요소가 많음 ○ 당해 과업과 참여기술진의 기술능력의 조화가 미흡
		불량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 조사, 분석내용의 계량화가 부실 ○ 당해 과업과 참여기술진의 기술능력의 부조화
최근 10년간 당해 과업과 유사한 과업 수행 실적	30	최우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성을 발휘한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매우 탁월 ○ 당해 과업 특성과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매우 많음 ○ 과업 수행시 난제 대처 능력(민원 등) 및 실적(포상, 기준수립 등)이 탁월
		우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과업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우수 ○ 당해 과업 특성과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많음 ○ 과업 수행시 난제 대처 능력(민원 등) 및 실적(포상, 기준수립 등)이 우수
		보통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과업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보통 ○ 당해 과업 특성과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보통 ○ 과업 수행시 난제 대처 능력(민원 등) 및 실적(포상, 기준수립 등)이 보통
		미흡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과업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미흡 ○ 당해 과업 특성과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적음 ○ 과업 수행시 난제 대처 능력(민원 등) 및 실적(포상, 기준수립 등)이 미흡
		불량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과업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매우 미흡 ○ 당해 과업 특성과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매우 적음 ○ 과업 수행시 난제 대처 능력(민원 등) 및 실적(포상, 기준수립 등)이 매우 부진
당해 과업 수행 관련 제안의 적정성	30	최우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매우 독창적인 접근방안을 제시 ○ 경제성, 시공성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 제시
		우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범주 상회의 수준으로 제시 ○ 경제성, 시공성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제시
		보통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보편적 수준으로 제시 ○ 경제성, 시공성 증진과 관련된 보통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미흡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 관련 주요 검토항목의 접근방안이 일반적 수준에 미달 ○ 경제성, 시공성 증진과 관련된 보통 이하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불량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의 접근 방안이 부실 ○ 경제성, 시공성 증진과 관련된 아이디어 미 제시

평가항목	배점	등급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합 계	100			기술 능력
업무수행 내용의 적정성	20	최우수	100	○ 당해 과업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매우 탁월 ○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우수	90	○ 당해 과업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우수 ○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80	○ 당해 과업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보통 ○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미흡	70	○ 당해 과업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미흡 ○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하
		불량	60	○ 당해 과업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불량 ○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매우 부실
작업계획 의 적정성	30	최우수	100	○ 설계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매우 우수
		우수	90	○ 설계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80	○ 설계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일반적 수준
		미흡	70	○ 설계 수행시 업무 선후 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보통 수준 이하
		불량	60	○ 설계 수행시 업무 선후 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매우 부실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40	최우수	100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 품질 보증 체계 구축 상태가 매우 우수. ○ 설계시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매우 적정하고 합리적
		우수	90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 품질 확보 체계 구축 상태가 보통 이상 ○ 설계시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80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 품질 확보 체계 구축 상태가 보통 ○ 설계시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보편적이고 일반적
		미흡	70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 품질 확보 체계 구축 상태가 미흡 ○ 설계시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보통 이하의 수준
		불량	60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 품질 확보 체계가 미구축 ○ 설계시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매우 부적절
전문가 활용계획 등	10	최우수	100	○ 당해 과업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탁월 ○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 방향이 매우 구체적
		우수	90	○ 당해 과업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우수 ○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80	○ 당해 과업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일반적 수준 ○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미흡	70	○ 당해 과업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보통 이하의 수준 ○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추상적
		불량	60	○ 당해 과업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매우 부적절 ○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을 미제시

* 항목별 상대평가지 붙임#3 업체수별 상대평가 항목 등급 배분표를 기준으로 업체별 등급배분

붙임 #3 : 업체 수별 상대평가 항목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최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불량 (10%)
1	1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업체수	등 급				
	최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불량 (10%)
21	2	4	9	4	2
22	2	5	9	4	2
23	2	5	9	5	2
24	2	5	10	5	2
25	3	5	10	5	2
26	3	5	10	5	3
27	3	5	11	5	3
28	3	6	11	5	3
29	3	6	11	6	3
30	3	6	12	6	3
31	3	6	13	6	3
32	3	7	13	6	3
33	3	7	13	7	3
34	3	7	14	7	3
35	4	7	14	7	3
36	4	7	14	7	4
37	4	7	15	7	4
38	4	8	15	7	4
39	4	8	15	8	4
40	4	8	16	8	4

붙임 #4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